

세계각국 商標登錄 요건(3)

목 차

1. 오스트렐리아
2. 프랑스
3. 독 일
4. 영 국
5. 베네룩스(벨지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 미국
7. 캐나다
8. 소련
9. 폴란드
10. 헝가리
11. 베트남
12. 일 본
13. 중 국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號〉

〈前號에서 계속〉

8. 蘇 聯

소련 법률상 商標라 함은 확립된 절차에 의해 등록된 標章으로서 특정한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다른 기업의 同種商品 또는 서비스와 識別하는데 사용되는 標章을 말한다.

商標는 상표들의 外觀上의 觀點으로 볼 때 文字標章, 圖形標章, 立體標章 및 其他標章으로 분류되며, 商標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색채, 소리, 빛 및 其他 標章도 등록이 가능하다.

文字標章은 낱말들이나 낱말형태를 띤 문자들의 결합으로 표현되며, 입체표장은 一般的으로 生産物이나 이것을 포장할 때의 기발한 착상의 형태로 나타나고(創造的인 병과 휴대 용

기들은 가끔 立體的인 표장으로 등록됨), 結合 商標는 도형, 문자, 입체적인 요인 및 또다른 요인들의 結合으로 표현된다.

어떤 표장이 상표의 형태를 보호받기를 주장하려면 무엇보다도 商標法上의 必要條件을 만족시켜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標章은 商標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第15條).

(1) 先出願되었거나 先登錄된 상표 및 소련이 加盟國인 國際協約에 의해 보호받는 상표와 同一하거나 類似한 標章 ;

(2) 特定活動과 연관되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상징 및 용어뿐 아니라 特定商品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명칭(특정상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標章이란 商標로서 일단 登錄이 되었으나 不特定多數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識別力을 상실한 일반명칭 혹은 특정명칭으로 소비자에 인식된 標章) ;

(3) 식별력이 결여된 標章이나 그러한 商標의 성질표시적 특성이나 낱말의 형태를 띠지 않는 글자의 배합으로 구성된 標章 ;

(4) 製造會社의 原產地 및 공인된 國際機關 등의 국기, 군복, 기타 紋章과 국경일 및 공휴일의 명칭 등을 그 단체의 동의없이 사용할 경우 및 產地를 表示한 지리적 명칭 ;

(5) 공인, 보증 등의 용어로 사용되는 명칭이나 封印 및 그와 유사한 것으로 구성된 標章 ;

(6) 製造者나 상품에 관한 허위, 기만적 정보를 포함한 標章 ;

(7) 사회주의자의 법률 및 도덕과 국제조약에 反하는 標章.

그러나 上記의 (2), (3), (4)에서 제기된 標章은 그것이 상표의 요부로 認定되는 것이 아니면 商標로서 使用이 허락된다.

소련에서 商標權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권리는 國營企業, 機關, 法人이 지위를 갖고 제조와 무역업무에 종사하는 協會, 協同機關 및 기타 사회기관이 가지고 法 第12條에 따라 外國人과 그 法人 및 그들의 양수인들에게 인정될 수 있고, 이들은 適法節次에 따라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지만 海外에 住所나 거소를 둔 外國人이나 法人들은 소련내에 代理人을 두어야만 한다.

商標登錄出願은 出願인이 상품별로 出願書 1부를 제출해야 하고, 出願인의 姓名, 住所, 出願商標의 標章 및 그 標章에 대한 說明, 國際分類, 그 표장이 등록될 商品 및 서비스의 목록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출원인이 外國인인 경우에는 代理人에 대한 內容과 署名을 한 위임장을 첨가해야 한다.

商標權存續期間은 출원일로 부터 10년간이며, 存續期間의 마지막 해에 갱신 등록 출원을 함으로서 10년간씩 期間延長이 가능하다.

상표가 등록일로 부터 계속하여 5년 동안 사용되지 않는 경우 取消될 수 있으며, 商標登錄이 이의신청의 결과로서 무효되는 경우와 계속 5년간 不使用에 의한 취소의 경우 및 등록증이 商標法을 위반하여 발급되었다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商標權은 무효로 된다.

商標權者의 허가없이 登錄商標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등록증의 유효기간 전체에 걸쳐 商標所有者는 시행법령에 따라 類似商品에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의 不法的인 사용의 중지를 요구하고, 損害賠償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등록상표 소유자는 法人地位를 가지고 제조 혹은 流通活動에 종사하고 있는 企業, 機關 및 組合에 商標使用權을 주거나 商標權을 양도할 수 있으며, 그 商標를 해외에서 出願登錄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양도할 수 있으나 讓渡契約은 소련국가발명발견위원회에 등록되어야만 하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無効로 된다.

또한, 商標 所有者는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의 일부에 대해서도 商標權을 양도할 수 있다.

9. 폴란드

폴란드 商標法 第4條는 商標에 관한 定義를 규정하고 있는데 商標라 함은 企業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他企業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부터 識別할 수 있는 標識(Sign)을 말하며, 그것은 語, 圖形, 裝飾, 色彩의 結合, 플라스틱품, 멜로디 기타 음향상의 시그널 및 이들 요소의 結合을 의미한다.

標識은 産物의 통상적인 명칭을 구성하는 때, 상품의 특징, 품질, 숫자, 분량, 무게, 가격, 용도, 생산방법, 생산시기 또는 생산장소, 조성, 기능 또는 有用性 기타 유사한 情報로서 商品의 출처를 확정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이루어진 때는 法 第7條에 의해 充分한 識別性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商標의 登錄要件에 관해서는 法 第8條 내지 第9條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商標가 :

- (1) 法律 또는 共同體의 諸原則에 反하는 때;
- (2) 第3者의 人格 및 經濟적 權利를 침해하는 때;
- (3) 不正確한 申請을 포함하는 때;
- (4) 폴란드의 名稱, 略稱이나 심벌, 記章, 國旗나 國歌, 軍의 記章, 품질증명표나 安全標를 포함하는 때;
- (5) 産業財産權의 보호에 관한 파리 同盟의 加盟國의 名稱, 略稱이나 심벌(旗章이나 記章) 또는 정부간 단체의 名稱, 略稱이나 심벌 또는 올림픽 심벌을 포함하는 때에는 商標로서 登錄할 수 없으며,

또한 同一種類의 商品에 관한 商標가 :

- (1) 商品의 출처에 관해 구매자로 하여금 오인시킬 정도로 登錄된 標章에 유사한 때;
- (2) 구매자로 하여금 오인시킬 정도로 국내에서 주지된 商標에 유사한 때;
- (3) 植物品種의 保護名稱을 구성하는 때에는 登錄받을 수 없다.

商標登錄出願은 法 第39條에 의해 特許廳에 제출된 날 또는 우체국에 접수된 날에 된 것으로서 출원인의 명칭, 商標 및 指定商品을 기재

해야 한다.

商標權存續期間은 商標登錄出願으로 부터 10年間이며 10年間 更新할 수 있다. 商標權 소멸요건에 관해서는 法 第25條에 詳述하고 있는데 商標登錄에 기인하는 權利는 다음의 경우에 權利가 소멸된다 :

- (1) 보호의 존속기간의 만료 ;
- (2) 商標登錄에 기인하는 權利者에 의한 포기 ;
- (3) 標章의 不使用 ;
- (4) 標章의 充分한 識別性의 상실 ;
- (5) 商標登錄에 기인하는 權利의 所有者에 의한 경제적 활동의 중지.

商標의 保護는 登錄에 의해 얻어지며 그 權利는 書面에 의한 讓渡契約에 의해서 讓渡할 수 있다.

10. 헝가리

헝가리 商標法은 自己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他人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識別하기 위해 使用되는 一切의 標章을 商標로서 保護하고 있으며, 法 第2條에서 標章이 보통 상품을 表示하기 위해 使用될 경우와 標章이 오로지 商品의 종류, 성질, 분량, 특성, 용도, 가격, 原產地 또는 생산의 時期를 表示할 경우에는 識別性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商標의 不登錄要件에 대해서는 法 第3條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標章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商標保護를 받을 수 없다 :

- (1) 標章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
- (2) 標章의 使用이 법을 또는 사회적 도덕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
- (3) 標章이 第三者의 權利를 害할 경우 ;
- (4) 標章이 주지되어 있는 상표와 同一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경우.

또한 標章이 국가, 관청, 조직의 명칭, 약칭, 旗章, 紋章 또는 記章 또는 이러한 것들의 모방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標章이 保護下에 있는 식물 또는 동물의 品種의 名稱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權利를 부여받지 못한다.

商標登錄 節次는 法 第26條에 의해서 中央發明廳에 出願을 하므로써 개시되며 權利는 적어도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와 함께 등록해야 할 標章 및 商品目錄을 포함한 출원에 의해서만 設定되고, 權利부여는 中央發明廳의 商標登錄出願에 대한 方式審査 및 實體審査 결과에 의해 決定되어 진다.

商標權의 존속기간은 出願日로부터 기산하여 10年間이며 10年마다 更新할 수 있다.

法 第16條는 商標權의 消滅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商標權이 소멸된다 :

- (1)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更新되지 아니하고 만료되었을 경우 ;
- (2) 商標權者가 自己의 상표를 포기한 경우 ;
- (3) 商標가 그 국가에서 5年 이상 使用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
- (4) 商標權者인 기업 또는 단체가 승계인이 없이 그 存立을 단념한 때 ;
- (5) 商標가 출원일로 소급하여 無効宣言 되었을 경우.

商標權의 移轉은 法 第12條에 의해서 契約에 의해 讓渡할 수 있지만, 승계인이 商標權을 취득할 자격을 갖지 아니한 때 또는 그 결과로서 當該商標를 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때 또는 그 결과로서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無効로 된다.

11. 베트남

베트남에서 상표의 法的保護를 획득하기를 원하는 産業 및 通商機關은 科學技術委員會의 國家發明廳에 그러한 등록출원을 해야 하며, 1958년 1월 3일자 수상법에 의거하여 이미 등록된 상품표장과 1975년 4월 30일 前에 남베트남에서 이미 등록된 제조표장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1982년의 법령에 따라 再登錄해야 한다.

베트남 法令에 있어 標章이란 한가지 색 또는 2 또는 그 이상의 색의 結合으로 文字, 숫자 또는 도형 또는 양각 또는 이러한 요소들의 結

습된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不登録要件에 해당하는 標章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현저성이 없는 標識, 단순한 기학적 형태, 수치 또는 발음되지 않는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標章(단, 장기간 사용되어 널리 인지된 標識의 경우는 예외);

(2) 협정에 관한 標識, 통상의 수치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품 및 공통의 지식에 관한 標識;

(3) 시간, 장소, 제조과정, 유형, 품질, 양, 성질, 성분, 용도, 가치 등 상품과 관련하여 서술적인 문자를 갖고 있는 標識;

(4) 상품의 출처, 성질 또는 용도에 대해 消費者를 오인 또는 현혹시킬 수 있는 標識;

(5) 국가 또는 국제조직의 관리, 품질 보장 등을 표시하는 頭文字와 同一 또는 유사한 標識;

(6) 國旗, 紋章 또는 記章, 국가지도자나 영웅의 초상화, 지리적 명칭을 나타내는 標識(단, 주무관청의 인정의 경우는 예외);

(7) 법, 공공정책과 사회도덕에 反하는 標識;

(8) 同種商品의 경우 베트남에서 기등록되었거나 베트남이 가입한 國際條約의 보호를 받고 있는 표장과 同一 또는 유사한 標識.

各 出願은 하나의 標章만을 표시해야 하며 표장의 指定商品을 기재해야 한다.

등록출원 수리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형식 심사 및 그 형식심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내용심사를 거쳐 거절 또는 標章登録證이 발행된다.

商標權 存續期間은 등록출원하고 적합한 형식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10년간이며,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 前에 更新登録出願을 함으로써 10년간씩 갱신 할 수 있다.

商標權의 消滅要件에 관해서는 法令 第12條에 규정하고 있으며 표장의 법적 보호는 다음의 경우에 소멸된다;

(1) 所有權者가 유효기간 만료前에 그 權利를 포기한 경우;

(2) 商標를 소유하고 있는 산업 또는 통상기

관이 더 이상 存在하지 않거나 상표사용권에 대한 법적 승계인이 없어 더이상 그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3) 계속하여 5년간 사용되지 않고 그 不使用에 대해 合法的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단, 標章이 생산물, 상품, 포장, 당해영업 또는 광고물에 부착된 경우 그 標章은 사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4) 主務官廳에 의해 등록된 지정상품의 품질이 더이상 요구되는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결정된 경우.

商標權의 移轉에 관해서는 양수인의 標章이 부착되는 상품의 특성과 품질을 보증하에 다른 산업 또는 통상기관에 표장사용권을 계약으로 일부 또는 전부 讓渡할 수 있으며, 양도계약은 國家發明廳에 등록되어야 법적효과가 발생한다. <계속>

<35쪽에서 계속>

만을 무효로 하고 다른 하나는 살릴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이것은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찍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례는 없지만, 일본의 경우 출원인에게 지정기간내에 그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취하하도록 명하고 그 선택, 취하를 하지 않으면 모두를 거절사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행을 참고로 하면 우리의 처리(심사, 심판)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범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모든 분쟁은 발생되면 공정하고 적정하게 신속히 처리함이 이상이며, 분쟁의 미연과 화해는 더욱 좋은일이다. 전쟁은 승리로 끝났으나 被比가 실익이 없다면 전쟁을 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